

『B.Startup 소셜미션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회 혁신을 이끌 소셜벤처의 임팩트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소셜벤처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B.Startup 소셜미션챌린지』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I

사업 개요

- ☐ 사업명 : 『B.Startup 소셜미션챌린지』
-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 지원기간 : 2023년 5월 ~ 12월 (8개월)
- ☐ 지원대상 :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
- ☐ 지원항목
 -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조직문화&리더십 워크숍
 - BM고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임팩트 민간협력파트너 SIAT 매칭 멘토링
 - 투자사와 소셜벤처의 양방향 소통 프라이빗 IR ‘SMALL IR’
 - 임팩트 주요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컨퍼런스 ‘임팩트 밋업’
 - 사회적가치 성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임팩트 리포트 제작 지원 등
- ☐ 협력파트너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셜벤처 민간협력파트너 ‘SIAT’을 구성하여 [소셜벤처 선정부터 성장지원까지 협업하여 액셀러레이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IAT (Social Impact Accelerating Team)

HGI, MYSC, 소풍벤처스, 루트임팩트, BNK벤처투자, 임팩트스퀘어,
크립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D3주빌리파트너스, KINSDAY,

II

모집 개요

- ☐ 모집기간 : 23.04.19.(수) ~ **23.05.08.(월) 18:00까지**
- ☐ 모집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 (지역무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 법인 기업 : 등본상의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
 -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6년 4월 20일 이후
- ☐ 모집규모 : 7개사
- ☐ 지원자격 :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BM을 가진 소셜벤처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Goal 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Goal 2)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3)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Goal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Goal 5)성평등 보장 (Goal 6)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Goal 7)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Goal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Goal 9)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Goal 10)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Goal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Goal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Goal 13)기후변화와 대응 (Goal 14)해양 생태계 보전 (Goal 15)육상 생태계 보전 (Goal 16)안전, 정의, 평화 (Goal 17)지구촌 협력확대

※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BM을 가진 소셜벤처에 한하여 서류 평가 시 **가산점 1점 부여**
 - 기후환경 문제 해당 목표 : ① Goal 6 ② Goal 7 ③ Goal 12 ④ Goal 13 ⑤ Goal 14 ⑥ Goal 15

- ☐ 신청방법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daeun@ccei.kr)로 제출
 - ※ 이메일 제출 시 제목표기 : **[기업명(대표자명)] 소셜미션챌린지 접수**
- ☐ 제출 서류
 - ①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참고)
 - ② 사업계획서(붙임2. 양식 참고)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붙임3. 양식 참고)
 -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⑤ 기타 증빙 서류(특허, 투자, 디자인 등)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하여 제출)

Ⅲ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세부 내용	일정
소셜벤처 모집 및 발굴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셜벤처 모집 및 발굴 (약3주간)	4~5월
소셜벤처 선정평가 ▽	서류 평가(1차) 및 대면 평가(2차)를 진행하여 소셜미션챌린지 참가기업 7개사 선정	5월
협약·오리엔테이션 ▽	선정 소셜벤처 대상 전자 협약 체결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6월
① 리바이브 조직문화 & 리더십 워크숍 ▽	소셜벤처 조직문화 & 리더십 워크숍 및 일대일 코칭 지원	(워크숍) 6월26일 (코칭) 7~11월
② SIAT 매칭 멘토링 ▽	임팩트 민간협력파트너 SIAT 1:1 매칭 멘토링	7~11월
③ SMALL IR ▽	투자사와 소셜벤처의 3:1 형식의 소규모 IR (총 3회)	7/9/11월
④ 임팩트 밋업 ▽	각 분야 전문가 및 소셜벤처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밋업	9월
⑤ 임팩트리포트 제작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성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임팩트리포트 제작	8~12월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프로그램 소개

① 리바이브 조직문화&리더십 워크숍

- 워크숍 일시/장소 : 6월26일(월) 13:00 ~ 17:00 / 장소 미정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후속 코칭 기간 : 7월 ~ 11월

- 주요내용

- 워크숍 및 후속 맞춤형 일대일 코칭(기업당 5회 내외) 진행 예정
- 기업 별 조직문화 현황 및 페인포인트 확인
- 조직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조직문화 방향성 정립
- 채용 & 온보딩, 퇴사 & 오프보딩 솔루션 구체화

② SIAT 매칭 멘토링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멘토링
- 주요내용 : 멘토·멘티 상호간 멘토링 매칭 희망조사 후 희망순위를 반영한 매칭 진행, 매칭 임팩트 투자 멘토링을 실시하고 기업 니즈에 따라 사회적 가치 및 타 투자사 멘토링 제공
- 2023 SIAT 구성

구 분	소 속 명	구 분	소 속 명	비 고
1	HGI	5	임팩트스퀘어	1:1 매칭 멘토링 및 프라이빗 IR
2	MYSC	6	크립톤	
3	소풍벤처스	7	블루포인트파트너스	
4	BNK벤처투자	8	D3주빌리파트너스	
9	루트임팩트			사회적 가치
10	KINSDAY			조직문화&리더십

③ SMALL IR

- 추진일정 : 7월/9월/11월 (총3회 개최 예정)
- 추진목적 : 투자사와 소셜벤처의 3:1 형식의 소규모 프라이빗 IR을 진행 하며 기업 역량 및 기업 투자 가능성 검토
- 주요내용 : 일방향 IR이 아닌 상호소통형 IR 방식으로 기업당 45분 내외로 배정하여 IR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

④ 임팩트 밋업 개최

- 추진목적 :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여 임팩트 민간협력파트너<SIAT>과 소셜벤처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기회 마련
- 주요내용 : 인사이트 강연, 아이스 브레이킹, 1:1 프라이빗 밋업, 패널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상호 비즈니스 이해 시간 마련 및 각 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킹

⑤ 임팩트리포트 제작

- 추진일정 : 8월 ~ 12월 (5개월간)
- 추진목적 :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시각화 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미치는 성과 및 궁극적 변화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함

- 제작과정 : 기업 현황 분석 및 진단(자료 검토 및 인터뷰)→임팩트 데이터 관리 기준 도출 및 측정(추가 자료 제출 및 피드백)→임팩트 리포트 최종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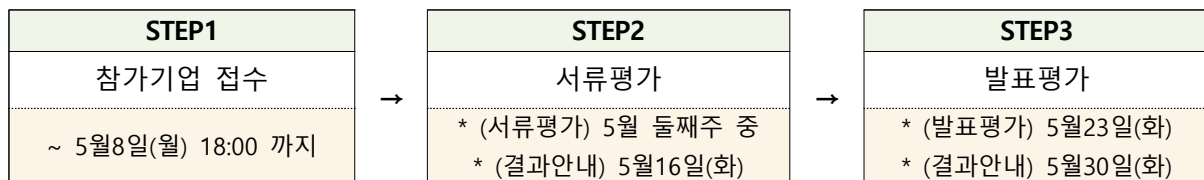
IV 평가 개요

□ 평가 방법 : (서류평가) 온라인 / (발표평가) 오프라인 대면평가

□ 평가 절차

-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는 발표·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비중	주요 내용
서류 · 발표 평가	Mission Statement	20	· 소셜 미션의 명확성 ·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비즈니스 모델의 연관성
	창의성	20	· 아이디어의 참신성, 독창성 등
	기술성	20	· 해당 기업의 제품 기술성, 유사기술 대비 경쟁력 등
	사회적 성과 및 임팩트	20	·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의 효과 ·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궁극적인 사회 및 시스템 전반의 변화
	기업의 역량	20	· 사업 참여 의지 · 팀원 구성 및 기업 역량 등

□ 결과통보

- 합격자 대상 메일, 문자 등 개별 안내 예정

V

유의 사항

- ☐ 참가기업당 1건의 아이템만 참여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정 이후 기간 포함)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유지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챌린지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 선정 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조사와 참가기업들의 후속 지원 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가입(5년 정보제공동의 포함) 필수
 - 협약체결 시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미 가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참고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다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다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